##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51

발의연월일: 2020. 8. 19.

발 의 자:서영석・인재근・문진석

김경협·박홍근·이정문

강선우 • 박영순 • 민홍철

최혜영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4차 산업혁명과 IT기술의 발달 등으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인력을 대체하는 무인화기기가 대거 등장하여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,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언택트 산업으로의 전환이가속화되는 등 무인화기기에 대한 공급과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.

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무인화기기의 대부분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·보급 및 운용되면서 장애인이 무인화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접근·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재화·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화기기를 설치·운용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 록 하고, 이에 따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3항 부터 제6항까지 신설).

###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재화·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화기기(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자의주문·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설치·운용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당한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1. 장애인의 접근·이용이 가능한 위치 및 공간을 확보하여 무인화 기기를 설치할 것
- 2. 음성·점자 안내 및 화면확대 기능이 지원되는 무인화기기를 설 치·운용할 것
- 3. 그 밖에 장애인의 접근·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④ 재화·용역 등의 제공자는 제3항에 따른 무인화기기를 설치하는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·이용을 보조

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
- ⑤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무인화기기를 설치하는 비용과 제4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재화・용역 등의 제공에	제15조(재화・용역 등의 제공에
있어서의 차별금지) ①·② (생	있어서의 차별금지) ①·② (현
략)	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재화・용역 등의 제공자는
	무인화기기(터치스크린 등 전
	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
	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거
	<u>나 사용자의 주문·결제 등을</u>
	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. 이하
	이 조에서 같다)를 설치・운용
	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를 장애
	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
	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
	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당한
	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	1. 장애인의 접근ㆍ이용이 가능
	한 위치 및 공간을 확보하여
	<u>무인화기기를 설치할 것</u>
	2. 음성·점자 안내 및 화면확
	대 기능이 지원되는 무인화기
	기를 설치・운용할 것
	3. 그 밖에 장애인의 접근ㆍ이
	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
	<u>하는 사항</u>

<u>&lt;신 설&gt;</u>	④ 재화·용역 등의 제공자는
	제3항에 따른 무인화기기를 설
	치하는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
	•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
	을 배치할 수 있다.
<신 설>	⑤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
	그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에 필
	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
	 한다.
<신 설>	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
	항에 따라 무인화기기를 설치
	하는 비용과 제4항에 따라 보
	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
	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
	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